

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의안 번호	174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07년 7월 2일

발 의 자 : 송재용 의원 외 5인

1. 주 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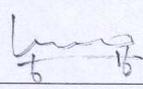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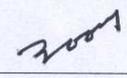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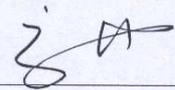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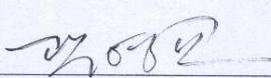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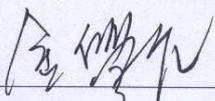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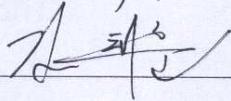
2007년 7월 25일부터 2007년 7월 26일까지 제168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와 제3차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함.

2. 제안이유

- 가. 대전광역시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,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시키고자
- 나.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.

【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】

찬 성 의 원 명 단

찬 성 의 원	서 명	비 고
송 재 용		
전 비 영 배		
오 영 세		
곽 영 고		
박 혁 연		
김 채 훈		

지방자치법

제42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2조(범위)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,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.

1. 교육감
2. 부시장, 부교육감
3. 의회사무처장 및 담당관 <신설 2000. 3. 10 조례 제2935호>
4. 시장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·국장, 본부장, 담당관, 실·과장급 <개정 2000. 3. 10 조례 제2935호>
5.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또는 시 본청의 실·과장급 이상인자 <개정 2006. 5. 12 조례 제3409호>
6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 기관장(교육장) <개정 2006. 5. 12 조례 제3409호>
7.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장 <개정 2006. 5. 12 조례 제3409호>

8. <삭제>

9. 제5호의 하급교육행정기관 및 제6호의 교육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으로서 실·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
<개정 2000. 3. 10 조례 제2935호>

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

제73조(시장 등의 출석요구) ①본회의는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,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, 답변하게 할 수 있다.